

# 감 정 평 가 의 료 서

감정평가의뢰물건(권리)		토지, 건물, 상가, 공장(사업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			
의 료 물 건 소 재 지					
소 유 자 (권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 ( )			
감정평가서의 사용목적		담보, 처분, 매수, 일반거래, 임대차, 자산재평가, 기타( )			
감정평가서의 제출처					
담보인 경우 채무자명		전화번호 : ( )			
의뢰물건 추정금액		₩	감정평가서 소요부수 2 부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		①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	④건축물관리대장등본	부
		②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부	⑤등기부 등본	부
		③토지대장 등본	부	⑥기타(기계목록 등)	부
기준시점, 기타참고사항					
<p>후면 기재의 약정사항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위 의뢰인 주 소</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 또는 상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인 (TEL. )</p>					
<p>소유자와 의뢰인이 다른 경우</p> <p>본인의 소유인 위 물건에 대하여</p> <p>의뢰인 가</p> <p>(주)효산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함을 동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소유자</p>			<p>금융기관(협약기관 포함) 등의 담보평가로서</p> <p>채무자 등이 착수금을 내고 의뢰하는 경우</p> <p>위의 평가의뢰 목적이 담보용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은 행 (협약기관)</p> <p>본 점</p>		
공 급 받 는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성 명			
	사 업 자 소 재 지				
	업 태	종 목			
<p>금융기관 등의 담보감정인 경우</p> <p>위의 감정평가 의뢰 목적이 담보 대출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금융기관명</p> <p>부 점</p>					
<h2 style="margin: 0;">(주)효산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h2> <p style="margin: 0;">&lt;22549&gt;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54(송현동), 2층(송현동)</p> <p style="margin: 0;">&lt;전화: 032-710-6443&gt; &lt;팩스: 032-710-6438&gt;</p>					
접 수 번 호			착 수 금	₩ 원	현장청구: ₩ -
착수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입금계좌		국민은행 043937-04-009149 <예금주:(주)효산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 약 정 사 항

1. 감정평가의뢰 물건(권리)중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사변이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2. 감정평가의뢰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감정평가 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납입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감정평가의뢰 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평가수수료의 3분의1이상의 감정평가 착수금(최저액은 300,000원임)을 감정평가 접수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 법인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소요추정 출장여비를 착수금에 포함합니다.
4. 감정평가보수는 당 법인의 감정평가완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5.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시 납입한 감정평가 착수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불능 사유가 감정평가의뢰인(담보 감정평가인 경우 확인금융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7항에 준합니다.
7. 감정평가의뢰 후 당 법인의 현장조사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제2항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감정평가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 착수금의 50%(최저액 ₩100,000)를 당 법인에 귀속하며 현장조사 후에는 감정평가 착수금을 일체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 후에는 소정의 감정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법령의 규정이나 당 법인과 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제 6항 단서, 제7항 및 제10항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뢰시 납입하지 아니한 착수금은 동 항에 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9. 당 법인의 승낙 없이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 (감정평가목적에 기재된 제출회사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당 법인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감정평가의뢰 물건의 소유자(권리자)와 감정평가의뢰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를 득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만약 소유자(권리자)의 동의 없는 감정평가의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자(권리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당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 감정에 관한 소송은 당 법인 소재지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니다.